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동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46
------	------

발의일자 : 2023. 11. 15.

발 의 자 : 정재동 의원

찬 성 자 : 이인식, 도병두의원

1. 제안이유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야간·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경감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소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 1) 평 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2) 토요일 :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 3) 휴 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라.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의료급여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3. 11. 16. ~ 11.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란 18세 이하 대상자를 일컫는다.
2.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일차의료서비스”란 야간·휴일에 제공되는 일차의료서비스를 말한다.
5.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개설·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일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에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이후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인접한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최소 운영시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이후 추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④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료기관의 의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관리) 제4조제4항과 관련한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 관련 의료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97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6. 2. 3., 2021. 8. 17., 2022. 6. 10.>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제16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66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의료급여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7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9조(의료급여기관) ② 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차 의료급여기관

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5. 4.] [대통령령 제33448호, 2023. 5. 4., 일부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